

# 마포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1. 6. 10.

복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1. 5. 21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21. 5. 24.

다. 상정일자 :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(2021. 6. 10.)
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복지정책과장

### 가. 제안이유

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(“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”)의 규정에 따라 마포복지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1) 출연대상 : 마포복지재단

2)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
-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

3) 출연 필요성

- 마포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및 운영에 필요한 보통재산 출연 지원

- 지역자원 총량 확대를 위한 모금·배분사업의 체계적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와 지역복지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복지 수준을 향상하고자 함

#### 4) 출연금액 및 내용

- 출연금액 : 2,106,235천원
- 출연내용 : 재단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(인건비, 운영비, 사업비) 지원
  - 기본재산 : 2,000,000천원
  - 보통재산 : 106,235천원
    - 인건비 51,651천원, 운영비 38,084천원, 사업비 16,500천원

#### 【 출연금 내역 】

(단위: 천원)

구분	예산액	세부내용	비고
<b>합계</b>	<b>2,106,235</b>		
복지재단 기본재산	2,000,000	· 기본재산 적립	
복지재단 운영	106,235		
인건비	51,651	· 기본급여, 제수당 등	
운영비	38,084	· 사회보험료, 급식비, 수도광열비, 도서인쇄비, 회의운영비, 소모품비, 자산취득비 등	
사업비	16,500	· 복지재단 홍보 및 나눔활성화 사업, 네트워크 구축 사업	

※ 출연에 대한 구의회 의결 후, 2021년도 사업예산(안) 심의·결정

#### 5) 추진경과 및 계획

- '20. 2. 21. 복지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
- '20. 3. 11.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시행
- '20. 7. 3. 마포구 출자·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

- ' 20. 9. 3. 서울시 2차 협의 완료
- ' 21. 3. 25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공포
- ' 21. 5. 21. 마포구의회 출연동의안 제출
- ' 21. 5. 21. 2021년도 사업예산안 제출

### 3. 검토보고 (조광현 전문위원)

- 본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규정과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재정지원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 규정에 따라 2021년 11월 설립예정인 마포복지재단 기본재산을 출연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.
- **마포복지재단 추진경위**
  - '20. 2. 21. 복지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
  - '20. 9. 3. 서울시 2차 협의 완료
  - '21. 3. 25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공포
- **재단 출연금액 및 내용**

출연금액은 2,106,235천원으로 출연내용은 재단 기본재산 20억과 향후 3년간 매년 10억씩 30억 총 50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며, 보통재산은 106,235천원으로 이는 인건비 51,651천원, 운영비 38,084천원, 사업비 16,5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.
- **검토의견**

마포복지재단의 설립근거가 되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는 작년 10월 제244회 임시회의시 복

지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된 이후 어렵게 조례안이 통과 된 바 있습니다. 집행부에서는 당시 구의회에서 재단 설립 시 우려하였던 사항과 집행부에서 요구하였던 재단설립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 구민에게 한층 더 나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타 : 없음